

부산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3가합49650 판결 [(일부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나5387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49650 판결

전문

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1. A 주식회사

2. B

3. C

4. D

변론 종결2014. 9. 17.

판결 선고2014. 11. 5.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582,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2013. 12. 22.까지는 연 6%의, 2013. 12. 23.부터 2014. 2. 20.까지는 연 9%의, 2014.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보증보험계약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2012. 7.경 한국제강 주식회사(이하 '한국제강'이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2. 8. 10.부터 2013. 8. 10.까지, 전도자재지급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철근가공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계약기간을 2013. 10.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2) 피고 A는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납품계약의 전도자재지급 보증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 순번 1과 같은 보증보험계약을, 대한제강 주식회사(이하 '대한제강'이라 한다)와의 물품공급계약, 철근임가공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각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 순번 2, 3과 같은 각 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1	선금금 보증보험계약	2012. 8. 1.	2012. 8. 10. ~ 2013. 10. 31.1) 이 사건 납품계약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보험기간이 연장되었다.	3억원
2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	2012. 10. 17.	2012. 10. 17. ~ 2013. 10. 16.	1억 5,000만원
3	선금금 보증보험계약	2012. 11. 7.	2012. 11. 21. ~ 2013. 11. 20.	8억원

3) 피고 B, C, D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A의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약정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하는 경우 원고가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대위변제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5%)을 부담하며, 보험사고 발생시 각 연대보증인은 사전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3. 10. 28. A로부터 피고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받았고, 2013. 11. 22.에 264,582,576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

2) 원고는 대한제강으로부터 피고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3. 10. 15.에 665,970,562원, 2013. 10. 21. 148,439,769원을 각 청구받았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무 264,582,5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위변제일의 다음 날인 2013. 11. 23.부터 2013. 12. 22.까지는 연 6%의, 2013. 12.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4. 2. 20.까지는 연 9%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창형

판사김태진

판사이재현

1) 이 사건 납품계약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보험기간이 연장되었다.